

◆머느리권씨 열전 28-2

숙의 권씨(권중비 추밀공파 19世, 권완의 딸), 단종대왕의 후궁

숙의 권씨의 일생

권중비(權仲非), 안동 권씨 가문의 딸로 1439년에 태어나 1521년까지 82년의 세월을 살았다. 범명은 혜경(慧鏡), 한 여인의 이름 앞에 붙는 기록은 이처럼 단정하지만, 그 생애는 조선 왕조의 비극과 함께 출렁였다.

그녀는 명문가의 규수였다. 부친 권완(權完)은 안동 권씨 추밀공파 인물로 관직에 오른 사족이었다. 그러한 가문의 배경 속에서 자라난 소녀는 1454년, 열여섯의 나이에 어린 임금 단종의 후궁으로 책봉된다. 숙의(淑儀)라는 품계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왕실의 내명부에 편입되었다는 의미였다. 궁궐의 시간은 바깥과 다르게 흐른다. 꽃이 피고 지는 계절보다 정국의 기류가 더 빠르게 변한다.

이듬해 1455년, 단종은 왕위를 선위한다. 어린 임금의 운명이 기울며 궁궐의 공기도 시어갔다. 후궁이었던 그녀 역시 하루아침에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왕비도 아니고, 대비도 아니며, 권력을 쥔 인물도 아니었으나, 왕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하나로 운명은 함께 흔들렸다.

1457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해였다. 부친 권완이 임금부에 하옥되어 능지처참되었고, 가문은 연좌되었다. 왕의 후궁이던 여인은 역적의 딸이 되어 노비로 전락한다. 궁궐의 비단웃은 벗겨지고, 신분의 이름은 지워졌다. 권중비라는 이름 대신 '죄인의 딸'이라는 낙인이 붙었다. 왕의 곁에서 살던 여인이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1464년, 방면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풀려났다고 해서 삶이 곧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 충정도 보은과 친전 등지에서 고통하게 살았다 고 전해진다. 한때 숙의였던 여인은 외방의 늙은 여인이 되어 긴 세월을 버텼다. 자녀도 없었다. 왕조의 비극 속에서 할매도, 권력도, 이름도 남기지 못했다. 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세월은 또 한 번 방향을 바꾼다. 1519년, 중종 대에 충정도 관찰사의 상소로 진전땅에서 숙절없이 헐벗은 삶을 살던 그녀에게 국가에서 쌀과 소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순한 구휼이 아니라, 잊혀졌던 존재를 다시 기록 속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였다. 한 시대의 상처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조치였다.

1521년, 향년 82세로 생을 마쳤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의 후궁이 되었고, 역적의 딸로 노비가 되었으며, 긴 세월을 견딘 생존자로 남았다. 네 번의 신분을 살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나 끝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기록이다. 역사책에서는 몇 줄로 지나가지만, 그 몇 줄 속에는 조선 왕조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스며 있다. 궁궐의 화려함도, 역모의 피비린내도, 유배지의 바람도 모두 한 여인의 생애를 통과했다. 혜경(慧鏡)이라는 범명처럼, 거울처럼 맑은 지혜로 세상을 비추었을까. 아니면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삶이었을까.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조용히 견딘 시간 자체가 하나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정순왕후와의 평행선

1439년에 태어난 권중비, 그리고 1440년에 태어난 정순왕후. 한 사람은 후궁이었고, 한 사람은 왕비였다. 그러나 두 여인의 생은 기이하지만큼 나란히 흘렀다. 그리고 1521년, 같은 해에 생을 마쳤다. 마치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그림자를 밟으며 걸어온 평행선 같았다.

권중비는 숙의로 책봉되어 단종의 곁에 들었고, 정순왕후는 왕비로서 그의 정실이 되었다. 궁궐 안에서의 자리는 달랐으나, 두 사람 모두 어린 임금의 운명을 함께 맞이한 존재였다. 1455년의 역지 선위, 왕위를 찬탈당했다, 1457년의 비극은 왕비와 후궁을 가리지 않았다. 왕비는 폐위되어 궁을 떠났고, 후궁은 역적의 딸로 노비가 되었다. 신분의 높낮이는 있었으나, 상실의 무게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정순왕후는 훗날 복위의 명분 속에서 숙종시기 왕비의 예우를 회복하여 사릉(思陵)에 안장되었다. 사릉(思陵)은 이름 그대로 '생각할 사(思)'자를 품은 능이다. 한 임금을 생각하며 지켜온 세월이 능후에 스며 있었다. 반면 숙의 권씨의 묘소는 미상이다. 기록은 그녀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몇 줄의 사실만 남겼을 뿐, 마지막 휴한 흙이 어디에 놓였는지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여인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종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았다. 기억은 때로는 생존의 이유가 되고, 때로는 지워지지 않는 한(恨)이 된다. 왕비는 폐비의 세월을 견디며 살았다. 후궁은 몰락한 가문의 딸로 궁궐을 견디며 살았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그러나 같은 시간을 통과했다.

역사는 왕비의 능을 남겼고, 후궁의 묘는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 앞에서 두 여인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나 권력을 지키지 못한 슬픔, 사랑했던 임금을 잃은 상실, 그리고 끝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안고 살아야 했던 긴 노년, 그 평행선은 끝내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숙의(정2품) 권씨 권중비와 정순왕후 송씨의 생은 그러했다. 왕비와 후궁이라는 차이를 넘어, 그 긴 세월 자체가 하나의 한(恨)이었다. 그리고 그 한은 조선 왕조의 깊은 그림자 속에 지금도 조용히 남아 있다.

조선 전기 왕실의 권씨 여성들

조선 전기 왕실의 계보를 더듬다 보면, 유난히 자주 눈에 띄는 성씨가 있다. 바로 권씨(權氏)이다. 한 가문의 딸들이 태종에서 단종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은, 당시 권문세가의 위상과 혼맥 정치의 단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나 그 인연은 언제나 영화(榮華)로만 귀결되지는 않았다.

먼저 현덕왕후는 문종의 비이자 단종의 생모였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의 정통성이라는 상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즉위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사후에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폐비되었다가 복위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왕의 어머니였지만, 그 지위조차 영원히 보장되지는 않았다.

또 다른 인물은 의빈(懿嬪) 권씨(태종 후궁)이다. 왕권이 강화되던 시기, 후궁의 자리는 단순한 개인적 총애의 자리라 아니라 정치적 균형과 가문 간 연대의 통로이기도 했다. 권씨 가문은 이러한 혼인을 통해 왕실과 연결되었고, 왕실 역시 유력 가문과의 결합을 통해 통치 기반을 다졌다. 그녀의 일생도 기구하다.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아들처럼 길렀다.

그리고 단종의 후궁이었던 숙의 권씨도 있다. 조선 전기 왕실의 권씨 여성들은 단순한 '내명부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왕권과 신권, 정통성과 찬탈, 총절과 연좌라는 거대한 정치적 파동 한가운데에서 있었다. 혼인은 축복이었으나 동시에 위협이었고, 총애는 명예였으나 또한 부담이었다.

결국 이들의 삶은 묻는다. 왕실과 맺은 인연은 과연 영광이었는가, 아니면 시련이었는가.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제4회 안동종친회 원로원 정기총회 개최

2025년 제4회 안동종친회 원로원(元老院: 의장 권재주) 정기총회가 2월 5일 오전 11시 안동시 옥동 북주3길 54 '제주북어식당'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원로원 권재주 의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주연 고문, 권기호 부의장, 권영수 감사, 권철환 종친회장, 원로원회원 등이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국민연례, 시조묘소 망배, 의장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결산보고,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재주 의장은 인사말에서 "관철환 회장이 종친회장을 맡은 이후 원로원 회원을 위하여 동해안, 남해안 등 세 차례 걸쳐서 관광을 다녀와 고맙기 그지없다"며 "무엇보다도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건강이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건강문제를 시한테 문의한 결과 첫째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셔야, 둘째 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서로 충돌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지시에 따라라, 셋째 음식을 골고루 먹고 단백질을 많이 흡수하라, 넷째 운동을 습관화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종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권기원 사무국장은 작년 5월 28일 원로원회원들이 부산일대를 관광하는 등 7가지 경과보고를, 2025년도 결산보고를 각각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며 권영수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기장 안동시장은 점심시간에 행사장을 방문, 원로원 회원들의 건강을 당부하는 인사를 했으며 이어 권백신, 권영백, 권기원, 권용덕 등 시장 및 시의원 출마예정자들도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했다.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지회장협의회, 총무협의회, 부녀회, 부회장단을 초청,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보고하고 "오는 6월 지방



선거에서 안동권씨가 위기라고 지적, 시장후보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신년인사회 개최는 계획대로 오는 3월 1일 시행하겠으며 안동권씨회관 대수리 문제는 모금운동을 퍼서 실행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안동종친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권용민, 권용덕, 권아름, 권오정, 권재가 등 사무차장 5명을 일일이 소개시키기도 했다.

그는 원로원 회원을 위해 오는 4월 관광을 위해 여행목적지를 선별 중에 있다 고 말하고 이 자리에서 찬조금 20만원을 원로원사무국에 전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권 회장은 건배주로 안동에서 생산되고 있는 월영주(月映酒)를 구해왔는데 이 술은 42도로 전국술품평대회에서 1등을 차지, 최근에는 구하기 힘든 술이라고 자랑한다.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복어를 곁들여 점심을 먹었으며 권 회장이 선물한 대전 김 1박스를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제3장 뿌리에 대하여

6. 한민족의 이상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종교들이 공존하면서도 종교간의 분쟁은 없다. 무슬림은 같은 종교 안에서도 수니파니, 시아파니 하면서 수백 년 동안 테러와 살인이 자행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민족은 종교가 서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서로간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회삼귀일(會三歸一)이 이상할 것이 없다. 참으로 현명하고 점잖은 민족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 가운데 모든 종교사상의 뿌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저 유명한 신라 말의 대학자(大學者)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의 글을 보자!

國有玄妙之道하니 曰風流라.

국유현묘지도 / 율풍류

設教之源이 備詳仙史하니 實內包含三敎하여 接化

群生 설교지원 / 비상선사 / 실내포함삼교 / 접화군생

且如入則孝於家하고 出則忠於國은 魯司寇之旨也오

차여입즉효어가 / 출즉충어국 / 노사관지지야

處無爲之事하고 行不言之敎는 周柱史之宗也오

처무위지사 / 행불언지교 / 주주사지종야



이 땅에서 세계정부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오니스트(일루미타나, 유태자본가)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유효한 유대인들(구약에 근거한 정통적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諸惡莫作하고 諸善奉行은 竺乾太子之化也라.

제악막작 / 제선봉행 / 축건태자지화야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조 년량비 서문)

증여세 절세 전략 ⑤

권오철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추밀공파 35世·삼덕회계법인대표



질문5)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35세의 자식(아들)이 20억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10억원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증여세를 절감하면서 자식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방안?

답변) 35세 아드님이 20억 원 주택을 구입하는데 10억 원이 부족하다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10억 원을 증여하면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활용 (5천만원 비과세)
현황: 성년 자녀에게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이 5천만원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 된다.
활용: 만약 아드님이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자식 간 금전 차용 (대출 형태 활용)
부족한 1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①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
필수 사항: 빌린 금액(원금 10억 원), 이자율, 변제 기한, 상환 방법(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공증 또는 확정일자: 세무 당국의 증여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는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③담보 설정 (선택 사항): 가능하다면 자녀의 다른 재산(예: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도 대출의 실질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④적정 이자율 적용 및 실제 이자 지급:
적정 이자율: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다.
이자 지급: 매월 혹은 정해진 주기에 맞춰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며,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다.

이자 차액 1천만원 미만: 연간 이자 차액(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 실제 지급한 이자)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나머지 금액(약 7억 8,300만원)에 대한 이자: 10억 원 중 2억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8,300만원에 대해서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주고받아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7억 8,300만원에 대한 연 4.6% 이자= 약 3,601만 8천원/년 (월 약 300만원)

⑥부모의 이자소득: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받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⑦원금 상환 계획 및 실행:
상환 능력: 자녀가 실제로 대출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 기존 자산 등을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상황: 차용증에 명시된 상환 계획에 따라 원금 상환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역시 계좌 이체 기록이 중요합니다.

3. 주택 구입 자금출처 소명 대비
자녀가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다음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 자녀의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나. 자녀의 기존 재산: 예금 통장 내역, 주식 거래 내역, 기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⑧금융기관 대출 증빙: 대출 계약서, 대출금 입금 내역
⑨부모님과 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이자/원금상환 내역: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서류 및 이체 기록

4. 증여세 절감을 위한 기타 고려사항
가. 세대생략 증여 (선택적 고려): 만약 아드님에게 다시 자녀(손자)가 있고, 손자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부모님(할아버지/할머니)이 아드님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30% 할증이 없지만, 나중에 아드님에게 증여하고 다시 아드님이 손자에게 증여하는 두 번의 증여세보다는 총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0억 원 규모에서는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심층 상담 필수)

나. 시간 분산 증여: 1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은 세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주택 구입 시점이 여유롭다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0억 원을 마련하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5. 구체적인 시나리오 예시 (10억 원 부족 시):
가.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지원.
나. 나머지 9억 5천만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대출 형태로 지원.

①이 중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가능.
②나머지 약 7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연 4.6%의 이자를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지급. (연 이자 약 3,371만 8천원)

6. 가장 중요한 점:
가. 세무 전문가와 상담: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나. 철저한 증빙 자료 준비: 모든 자금 흐름과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보관해야 한다.

다. 실질적인 거래: 계약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서류만 만들어두고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크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국세청의 주요 관심 대상이므로, 형식뿐 아니라 실질에서도 증여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호에 계속)

할 수가 있었던가!

그 답은 여기에 있다.

최치원 선생은 이를 풍류(風流) 또는 풍교(風敎)라 하였다. 그는 바람을 곧 생명의 본질로 보았던 것이다. 생명은 돌 때(순환) 팽이처럼 바람을 일으킨다. 바람은 생명이야.

원자에서 우주까지 들지 않는 것은 없다. 지구(자전속도 1,337km/h, 공전속도 29km/s, 위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극점은 자전속도는 0로)를 비롯한 태양, 은하계, 대우주가 돌 때 사계사시(四季四時)가 순환(Circulation)할 때, 생사가 서로 돌아갈 때, 바로 그대 바람이 일어난다.

생명의 이치(理致)가 곧 도(道)의 시작인 것이며 끝인 것이다. 생명은 곧 바람이요, 그 현상은 곧 흐름이다. 성경에서 성령을 바람(루아흐, 프뉴마)로 표현한다. 군생(群生)이 접화(接和)하는 것이다. 주역의 64괘(卦), 즉 우주만물에 담긴 생성과 변역의 원리는 풍류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음호에 계속)